

청원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	
청원인	성명(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)			생년월일 (여권번호·외국인등록번호·법인등록번호)	
	주소(소재지) 또는 거소				
	전화번호		팩스번호		전자우편주소
청원기관					
청원사항		☐ 피해의 구제를 위한 사업장 근로감독 ☐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(사업장 근로감독)에 속하는 사항			
청원 사업장정보	사업장명			대표자	
	업종	근로자수		전화번호	
	소재지				
청원 내용					
※ 「청원법」 제11조제4항에 따라 청원인은 필요한 경우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.					
공개청원 여부		☐ 공 개 청 원 ☐ 비 공 개			

위와 같이 청원합니다.

이
이
이

청원인 (서명 또는 인)

○○지방고용노동청장 귀하

청원서 접수증

청원서 접수번호	청원인 성명
청원서 접수기관	접수자 성명 (서명 또는 인)

귀하의 청원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.

$\frac{1}{2}$ $\frac{1}{3}$ $\frac{1}{4}$

○ ○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

직인

유 의 사 항

1. 청원사항이 법률·명령·조례·규칙 등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를 내용으로 하거나,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일 경우에는 「청원법」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원의 내용, 접수 및 처리 상황과 결과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청원(공개청원)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'공개청원 여부'란에 공개청원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.
2.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원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(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기간과 공개청원 시 국민의 의견을 듣는 기간은 제외)에 처리결과가 통지됩니다. 부득이한 경우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, 해당 기간이 경과하도록 결과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「청원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청원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]